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2
----------	------

2023년 9월 1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8월 14일, 김재진 의원 외 4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서울시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보호수를 지정할 때 고시 및 이의신청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 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3).
- 4)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4).
- 5)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 6) 보호수의 보호에서 행위 제한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8조).
- 7) 보호수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보호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이하 “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6¹⁾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의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²⁾로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법이 개정³⁾되면서 ‘보호수의 지정·고시’, ‘보호수의 관리 이전’, ‘행위제한’, ‘지정해제’ 등이 정비되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나 동 조례는 201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타법개정⁴⁾ 이외에는 개정된 바 없으므로 상위법에서 명시한 법적 근거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적으로 안 제3조(보호수의 지정·고시)는 보호수의 고시와 관련하여 지정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의 법 이해와 관리청의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1)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2) [시행 2010. 3.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852호, 2009. 9. 29., 제정]

3) [시행 2019. 7. 9] [법률 제16197호, 2019. 1. 8, 일부개정]

4) 타법개정 연혁(2017. 1. 5., 2019. 7. 18., 2020. 12. 31.)

- 안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는 보호수 관리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⁵⁾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보호수가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4조(보호수의 해제)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에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호수의 지속가능한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목의 생육, 이식, 질병, 토양 등 여러 수목관리 분야 기술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조직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임.

- 안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은 현행 조례 제8조(보호수의 보호)에 규정된 부분을 제1항의 ‘행위 제한’과 제2항의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제3항은 행위 허가 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보호수

5)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10조(보호수의 점검)는 현행 조례에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정기점검의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서울시는 2023년 현재 지정보호수 202주를 관리⁶⁾하고 있으며, 병해충방제 등 ‘보호수 생육관리’와 지지대, 안내판 등 ‘보호수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총 예산은 6억 4천6백만원으로 보호수 1주당 연간 약 320만원의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음.

지난해 정밀진단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육이 불량한 수목 11주가 파악된 바 있고 영양공급 등의 피해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1년 보호수 고사로 2주가 지정해제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주가 줄기 부후로 해제⁷⁾되고 있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피해치료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현황(2023년)〉

-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수목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의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며, 수종별 연령, 크기 등은 산림청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함
- 현재 서울시 내 15종 202주가 지정되어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종로구가 30주로 가장 많음
(서초구 24주, 용산구 19주, 마포구 15주, 중구 13주, 은평구 12주 등)
- 상록수는 소나무, 향나무 등 3종 23주,
- 낙엽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12종 179주의 키 큰나무로 구성

6) 2023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조경과-369, 2023.1.11.), 2023년 소요예산 6억 4천6백만원

7) 졸참나무('22.12.01., 성북구), 느티나무('21.12.30., 서대문구), 회화나무('21.12.30., 송파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의 제목 “(보호수의 지정)”을 “(보호수의 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인 등은”을 “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정 연월일

나.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다.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경우

가.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보호수의 해제)”를“(보호수의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화재”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를 “인한 소실 및 손상 등으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리청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중 “표시할 수 있도록”을 “안내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의”를 “등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기”를 “시행하기”로, “발생할”을 “생육에 영향을 미칠”로,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목보호기술자”를 “수목보호 전문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p> <p>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p> <p>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p> <p>제3조(보호수의 지정) 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p> <p>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p> <p>3. 삭제</p> <p>제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① 시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p>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② 보호수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 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정 연월일

나.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다.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

관리인 등은(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관리인-----

-.

⑧ ----- 제7항-----

-----.

④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

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 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 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신 설〉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경우

가.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

〈신 설〉

여야 하며,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제4조(보호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

-----.

1. --- 천재지변, 화재 ----- 인
한 소실 및 손상 등으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
수의 소유자 및 관리청에게 그 사
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의 표지) 관리청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된 사람은 변경사항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보호수의 보호) ①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채취, 절·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수목 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

제5조(보호수의 표지) -----

----- 안내하는 -----
-----.

제6조(보호수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제7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

① ----- 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호수의 보호) <삭제>

<삭제>

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보호수의 점검) ① 관리청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행하기 -----

생육에 영향을 미칠 ----- 경우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보호수의 점검) ① -----

-----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
검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 수목보호 전문가

-----.